

취업사관교육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5. 04. 24. 개정 2018. 10. 29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취업사관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경동대학교의 메디컬, 메트로폴, 글로벌 캠퍼스에 각각 센터를 두며, 총장은 필요시 3개 센터 중에서 총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10. 29.)

제3조(업무) 센터는 경동대학교 재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, 집단 및 온라인 상담 활동
2. 입사 서류전형 및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교육 활동
3. 취업 특강, 세미나, 취업동아리 지원 등 각종 취업지도 활동
4. 기타 취업 지원과 관련된 활동

제4조(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문상담사 등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8. 10. 29.)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(삭제 2018. 10. 29.)

④ (삭제 2018. 10. 29.)

제5조 (산학협력중점교수의 배정) ① 센터장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센터로 배정해 줄 것을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10. 29.)

② 센터로 배정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센터 소속으로 본다. (개정 2018. 10. 29.)

제6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취업지도위원 중에서 (총괄)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8. 10. 29.)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10. 29.)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운영계획 수립
2. 시행세칙 및 지침의 개폐

3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에서 지원한다. (개정 2018. 10. 29.)

제7조 (시행세칙 및 지침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예산 부수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